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32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 
나. 2024. 3. 6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개시일을 2024. 3. 6.로 변경하였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류영재

별지